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단2938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6040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1. 23.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항소하였으나 2019. 4. 9. 항소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793호)이 선고되었으며, C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7. 11.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다230929호)이 선고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그런데 C는 2017. 5. 11.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경기 가평군 E 소재 부동산을 759,2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D은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7. 5. 11.에 303,680,000원, 2017. 6. 29.에 415,520,000원, 2017. 7. 31.에 40,000,000원 합계 759,2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다.다. C는 이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822호) 2021. 2. 2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위 제1심 유죄판결 중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1997. 10. 20.경 경기 가평군 G, H, I, J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채무 10억 원 상당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9454호 대여금 사건에서 ‘채권자 K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K는 2015. 10. 16.경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1.경 A에게 차용금 2억 1,5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A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강제집행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고, A도 K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5. 11.경 자신이

상속 받은 위 부동산을 재단법인 D에 759,2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6. 27.경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상속 등기하고 2017. 6. 29.경 위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차명 계좌인 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5. 11.경 303,680,000원, 2017. 6. 29.경 415,520,000원, 2017. 7. 31.경 40,000,000원 합계 759,20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C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수 있도록 방조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일부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C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이 과연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를 강제집행면탈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고소 및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경훈